

## 4.5.1 장학규정

|      |               |    |               |    |               |
|------|---------------|----|---------------|----|---------------|
| 제정   | 1994. 04. 04. | 개정 | 2017. 09. 14. | 개정 | 2022. 10. 04. |
| 개정   | 1995. 01. 24. | 개정 | 2018. 04. 05. | 개정 | 2023. 02. 02. |
| 개정   | 1998. 07. 24. | 개정 | 2018. 07. 26. | 개정 | 2023. 06. 08. |
| 개정   | 2000. 04. 21. | 개정 | 2018. 10. 23. | 개정 | 2023. 11. 30. |
| 개정   | 2009. 09. 07. | 개정 | 2019. 08. 30. | 개정 | 2024. 10. 07. |
| 전부개정 | 2015. 11. 17. | 개정 | 2020. 02. 28. | 개정 | 2024. 12. 04. |
| 개정   | 2016. 02. 18. | 개정 | 2020. 12. 31. |    |               |
| 개정   | 2016. 02. 26. | 개정 | 2021. 02. 16. |    |               |
| 개정   | 2016. 04. 01. | 개정 | 2021. 06. 02. |    |               |
| 개정   | 2016. 06. 23. | 개정 | 2021. 07. 29. |    |               |
| 개정   | 2016. 08. 11. | 개정 | 2022. 02. 03. |    |               |
| 개정   | 2016. 11. 15. | 개정 | 2022. 06. 09. |    |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초당대학교 학부 재학생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개인 기부자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항 번호 신설 2023.11.30.>

② 학부생(신편입·재입학생 포함)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교내외 장학 동시 수혜 시 교외장학을 우선 처리한다.(단, 생활비성 장학금은 등록금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개정 2023.11.30.>

제3조(지급대상)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3.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조달이 곤란한자
4.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5. 교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6. 법령에 의하여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손 또는 새터민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장학운영 기본계획) 학생복지처장은 매 학년도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을 받은 후 교내외에 공지한다.

## 제2장 장학위원회

제5조(장학위원회) ① 장학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장학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학생복지과장으로 한다.
- ④ 교무처장, 기획연구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 생활관장, 기획연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04.>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 신입생 장학에 관한 사항
  - 3. 장학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모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3장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제6조(신입생장학금)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되 수혜조건, 장학종류 및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위원회 의의 심의 후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6.23., 2023.06.08.>

- ① 수시우수장학: 수시 입학한 학생에게는 내신성적 등에 따라 각각 수업료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 ② 수능성적우수장학: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수능성적에 따라 각각 수업료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 ③ 초당항공장학: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한 학생 중 학교장이나 담임교사가 추천한 우수한 학생에게 각각 수업료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 ④ MZ장학(마중물장학):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 안정화를 위한 일정금액의 생활비성 교육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04.>
- ⑤ 고교기능장학: 고교 재학 중 국가자격증 취득자에게 일정금액의 생활비성 교육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04.>

제7조(성적우수장학금) 매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각각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그 세부지급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2.18.>

제8조(복지장학금) 복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① 복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유형에 선발된 자로서 등록금 중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납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09.14.>
- ② 장애학생지원장학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정도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납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2.16.>
  - 1. 경증 : 수업료 30% <개정 2021.02.16.>
  - 2. 중증 : 수업료 50% <개정 2021.02.16.>
  - 3. 삭제 <2021.02.16.>

③ 사랑장학금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자로서 학생상담센터장의 추천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9.08.30.〉
2. 생활관에 입소한 학생 중 사회적 배려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학생, 도서벽지출신 등)로 생활관장의 추천에 따라 생활관 관리비를 납부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3. 생활관에 입소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생활관비 일부를 납부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5.〉
4. 장애학생에게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추천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④ 특별장학금: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 승인을 받은 후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⑤ 초당케어장학금: 보호종료 아동에게 업무협약에 따라 장학금 및 생활관비, 교육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신설 2023.11.30.〉

⑥ 성인학습자장학금: 성인학습자의 학교적응 및 성공적 학업성취를 위해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제9조(능력개발장학금) 능력개발장학금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초당리더장학금: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의 발전과 면학분위기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학생으로서 학생복지처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인 학생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4.01〉
2. 공로장학금: 재학 중 국가고시(사법, 행정, 외무),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 남은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납부 면제한다.
3. 초당인재상장학금: 초당인재상 구현에 관한 규정에서 권장하는 자격을 취득한 학생에게 자격 취득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등록금에서 해당 장학금만큼 납부 면제한다. 〈개정 2023.11.30., 2024.10.07.〉
4. 재능우수장학금: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 및 예·체능 병역면제자격을 갖춘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일부를 납부면제 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5. 자기개발장학금: 교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능력개발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6. 산학장학금: 사회맞춤형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약칭 ‘커스텀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 지급 할 수 있다. (단, 산학장학은 업체와 협약에 의한 매칭장학이므로 직전학기 이수학기 및 이수학점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 〈개정 2016.02.18., 2023.02.02.〉
7. 비행훈련지원장학금: 콘도르비행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재학생으로서 비행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직전학기 이수학기 및 이수학점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6.08.〉
8. 초당인재마일리지장학금: 초당인재상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수준 마일리를 취득한 학생에게 매 학기 정한 금액의 마일리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31.〉
9. 비교과활동인증장학금: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6.02.〉
10. 정비훈련지원장학금: 초당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재학생으로서 항공기술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7.29>

11. 체육계열장학금, 운동부우수장학금: 운동부학생에게는 대회 성적에 따라 각각 수업료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12. Fly high장학금: 육해공군 예비장교 합격자(조종특기)에게 비행교육원장의 추천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제10조(국제교류장학금) 국제교류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 면제한다.
2. 교환학생장학금: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하여 외국 대학에서 수학중인 학생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3. 해외연수장학금: 본교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생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국외항공정비사지원장학: 항공정비사면허(또는 항공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국외 항공정비사 면허취득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제11조(특정장학금) 특정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국가유공자장학금: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손에게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따라 등록금의 50% 또는 100%를 납부 면제한다. 단,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학기에 한한다.
2. 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보호대상자로 등록된 학생에게 등록금의 50%를 납부 면제한다. 단,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학기에 한한다.
3. 초당가족장학금: 부모, 형제자매, 직계존속 및 부부가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각각 납부 면제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4. 직계장학금: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납부 면제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수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2.06.09.>
5. 백제장학금: 신입생 중 백제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소정의 기간 일정 금액을 납부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4.12.04.>
6. 백합장학금: 백제약품, 초당약품, 초당산업 및 백제고등학교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등록금의 50%를 납부 면제 할 수 있다.
7. 편입장학금: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0.12.31., 2021.02.16.>  
가. 삭제 <2021.02.16.>  
나. 삭제 <2021.02.16.>  
다. 삭제 <2021.02.16.>
8. 군인 장학금: 군사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현역 군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2.26.>
9. 면학장학금: 재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06.23.>
10. 다문화가족장학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족의 구성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인 재학생에 한한다. <개정 2016.08.11., 2022.06.09.>
11. 학과장추천장학금: 학과장이 추천한 자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04.05.>
12. 입학처장추천장학금: 신·편입 모집에 합격한 학생 중 입학처장이 추천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2.28.〉

13. 다전공장학금 : 다전공(복수·연계·융합전공), 전공디그리과정 이수자 중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4.12.04.〉

14. 지역상생장학금 :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의거 해당 지자체장 추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0.07.〉

제12조(근로봉사장학금) 근로봉사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지역사회봉사장학금: 국내·외 봉사프로그램 참가자중 학생복지처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현금지급 할 수 있다.
2. 장애인도우미장학금: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으로서 소속 학과장이 추천한 학생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지급 할 수 있다.
3. 봉사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교내외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자로서 초당지역공헌센터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4.10.07.〉
4. 홍보대사장학금: 교내외 행사에서 대학홍보대사로 활동한 학생으로서 입학처장 및 홍보실장이 추천한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현금지급 할 수 있다.

## 제4장 장학생 선발

제13조(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장학금 주관 부서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② 관련서류는 장학의 종류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신청자격)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전학기가 7학기인 경우는 제외한다. 〈항 번호 신설 2023.02.02.〉

② 복지장학금, 공로장학금, 초당인재상장학금, 자기개발장학금, 비행훈련지원장학금, 국제교류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새터민장학금, 군인장학금, 면학장학금, 다문화가족장학금, 근로봉사장학금, 학과장추천장학금, 편입장학금, 장애학생지원장학금, 정비훈련지원장학금,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장학금, 초당케어장학은 취득학점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8.11., 2016.11.15., 2018.07.26., 2018.10.23., 2020.12.31. 2021.07.29., 2022.02.03., 2023.02.02., 2024.12.04.〉〈항 번호 신설 2023.02.02.〉

제15조(장학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직전 학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신입학의 경우 8학기, 편입학의 경우 4학기를 초과하여 재학 중인 학생. 단, 총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개정 2016.02.18., 2022.02.03.〉
3. 장학대상 선발 이후 등록하지 않은 휴학생 〈신설 2017.06.19.〉
4. 기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신설 2017.06.19.〉

제16조(교외 장학생 추천) 교외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부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 의뢰할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외부 장학단체에서 수혜자의 학과, 인원 및 자격기준을 정하여 추천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이 추천한다.
3. 해당 학과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학주관부서장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4.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 주관부서장은 신청 및 추천된 장학생 후보에 대하여 자격, 중복추천 여부 및 장학금액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장학생 선정시 동점자 처리 우선 순위는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5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

제18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등록시 개인별 등록금 납입 고지서에 금액을 명시하여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현금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수혜여부가 등록기간 이후에 확정될 경우에는 현금 지급 할 수 있다.

③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학기로 한다.

제19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①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한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자퇴, 제적된 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② 수혜기간이 2개 학기 이상인 장학생 중 성적자격 미달자는 미달된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자퇴 후 재입학 한 경우 기존 장학수혜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6.02.18.>

제20조(중복수혜 금지) ①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랑장학금
2. 자기개발장학금
3. 산학장학금
4. 비행훈련지원장학금
5. 해외연수장학금
6. 지역사회봉사장학금
7. 장애인도우미장학금
8. 봉사장학금
9. 홍보대사장학금
10. 교환학생장학금 <개정 2016.04.01.>
11. 초당리더장학금 <개정 2016.04.01.>

12. 초당인재마일리지장학금 <신설 2020.12.31.>

13. 비교과활동인증장학금 <신설 2021.06.02.>

14. 정비훈련지원장학금 <신설 2021.07.29>

② 삭제 <2020.12.31.>

제21조(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15조 및 제16조에 해당될 때는 심사를 거쳐 차위자로 교체할 수 있다.

제22조(장학사정관) 학생들에게 상담 및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계곤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4. 4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1. 24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7. 24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경과규정)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선발된 장학생 및 2016학년도 입학요강에 공지된 장학은 2016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경과규정)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선발된 장학생 및 2016학년도 입학요강에 공지된 장학은 신입학의 경우 8학기, 편입학의 경우 4학기까지 유효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장학금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8조 1항의 복지장학금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장추천장학금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11호의 학과장추천장학금의 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자격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신청자격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장학, 신청자격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제7호 편입장학금, 제14조 신청자격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처장추천장학금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12호의 입학처장추천장학은 2020학년도 1학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당인재마일리지장학금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9조 8항의 초당인재마일리지장학금의 개정규정은 2020년 2학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편입장학, 다전공장학, 신청자격, 중복수혜금지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7항 편입장학금, 13항 다전공장학금, 제14조 신청자격, 제20조 중복수혜 금지 규정은 2021년 1학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교과활동인증장학금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9조 9항의 비교과활동인증장학금의 개정규정은 2021년 1학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복수혜금지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20조 중복수혜 금지 규정은 2021년 1학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훈련지원장학금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9조 10항의 정비훈련지원장학금의 개정규정은 2021년 2학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청자격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신청자격의 규정은 2021년 2학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복수혜금지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20조 중복수혜 금지 규정은 2021년 2학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03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9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학장학금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6호의 산학장학금은 2022학년도 2학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능력개발장학금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7호의 비행훈련지원장학은 2023학년도 1학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입생장학금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수시우수장학 제②항 수능성적우수장학 제③항 초당항공장학은 2019학년도 1학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지장학금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특별장학금은 2018학년도 1학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능력개발장학금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1항 체육계열장학금, 운동부우수장학금 제12항 Fly high 장학금은 2019학년도 1학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교류장학금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국외항공정비사지원장학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